



## 교육감 규정

번호: A-420

제목: 학생 품행 및 징계 - 체벌

항목: 학생

발행: 2025년 6월 20일

###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자 교육감 규정 A-420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학생을 상대로한 체벌을 정의 및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 혐의에 관한 신고와 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

- 뉴욕주 규정 변경에 따라 체벌의 정의를 갱신합니다(섹션 II).
- OSI 체벌 및 언어적 학대 온라인 신고 양식 URL 링크를 갱신합니다.(섹션 IV.)
- 체벌 혐의에 대한 학교 자체 조사 및 결정 시한을 특별조사 담당실의 의뢰 접수일부터 수업일 기준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합니다(섹션 VI.C.1.)
- 시니어 필드 감독관이 학교 자체 조사를 검토하는 일정을 추가하고 시니어 필드 감독관이 그 기간 동안 최초 결과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학교 슈퍼바이저가 해당 조사를 최종 종결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섹션 VI.C.3, 4.)
- 첨부 1을 삭제하고 체벌 및/또는 언어적 학대 혐의 조사 신고 양식이 제공되는 웹페이지로 안내합니다.(섹션 VI.C.)
- 뉴욕주 규정 변경에 부합하여 뉴욕주 신고 요건을 갱신합니다(섹션 X.)



## 교육감 규정

번호: A-420

제목: 학생 품행 및 징계 - 체벌

항목: 학생

발행: 2025년 6월 20일

### 요약

본 규정은 학생에 대한 체벌을 정의 및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 혐의에 관한 신고와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I. 정책

- A. 학교 경내, 학교 견학 중 및 기타 학교 밖 학교 관련 행사에서 교육청 직원, 건물 관리 직원, 계약업체, 컨설턴트, 커뮤니티 단체(CBO) 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DOE)의 정책입니다.
- B. 학생의 방해되는 문제 행동은 절대 체벌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지도 중재, 부모님과 협력 및 교육감 규정 A-443과 교육청의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지도하여 학생의 방해되는 문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C.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 II. 정의

체벌<sup>1</sup>은 학생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학생에게 물리력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체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을 진정 및 안정시키고 또는 기술을 가르치거나 학생의 학업 완수를 돕거나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한 물리적 호위 또는 짧은 신체적 접촉 및/또는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행동.
- 대안 절차와 방법이 무리 없이 활용될 수 없을 때, 신체적 상해로부터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적 억제(예: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적 논쟁을 중단하는 것).

<sup>1</sup>이 규정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언어적 학대에 대한 신고 및 대처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2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III. 직원에게 알림

학교장<sup>2</sup>/대리인<sup>3</sup>은 반드시 교사가 아닌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체벌에 관련된 교육청의 정책과 규칙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 A. 각 학년도 시작 시점에 모든 교직원과 본 규정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이 규정서의 사본을 모든 교직원에게 배포하며 각 직원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B. 본 규정의 중요성을 학년도 시작한 후에 학교에 오는 모든 교직원과 검토하고 본 규정서의 사본을 각 직원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직원은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C. 학년도 중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재배포하거나 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IV. 체벌 혐의 신고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OSI)은 체벌이라고 제기된 주장과 관련하여 교육청 내의 여러 부서 및 다른 적절한 관계자에게 정보 수집, 평가, 검토, 후속 조치 및 배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A. 직원의 의무

1. 체벌의 피해자일 수 있는 학생을 목격했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 모든 직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알게 된 후 수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학교장/대리인에게 혐의에 대해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또한 반드시 아래 섹션 IV.B.3에 명시된 증인 진술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학교장에 대한 체벌 혐의의 경우 직원은 반드시 OSI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OSI에 직접 체벌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nycenet.edu/cpu>.

#### B. 학교장/대리인의 의무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교육청 직원, 건물 관리 직원, 계약업체, 컨설턴트, 커뮤니티 단체 직원 등이 학생에게 행한 모든 체벌의 혐의를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즉시 교육청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ORS)에 정보를 입력하여 OSI로 신고해야 합니다.

<sup>2</sup>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교장이라는 용어는 사이트 슈퍼바이저를 말합니다

<sup>3</sup>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학교장이 지명한 슈퍼바이저를 의미합니다.

1. 학교장/대리인이 체벌 혐의에 관한 보고서를 OORS에 제출하면, 이는 자동으로 OSI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원으로부터 증인 진술(OORS 양식 이용)을 받아 혐의에 대해 알게 된 후 수업일 기준 2일 내에 OORS에 진술을 입력해야 합니다.
  3. OSI에 신고하고 신고한 직원의 증인 진술을 받은 후, 학교장/대리인은 OSI에서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까지 더 이상의 조사를 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혐의 행동이 범죄일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12에 명시된 통보 및 신고 요건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뉴욕시 경찰청("NYPD")과 특별조사 커미셔너("SCI") 담당실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C. 체벌에 관한 신고가 OSI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접수되고 나면, 이 시스템은 확인 번호(OSI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OSI 번호는 신고 사건에 대한 후속 소통 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 D. 학부모, 학생 및 비-교육청 직원은 피해 호소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리거나 OSI 온라인 신고 시스템 [www.nycenet.edu/cpu](http://www.nycenet.edu/cpu)를 이용하거나 OSI에 (718) 935-3800로 연락하여 체벌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불만 제기는 OSI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 피해 호소인의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이 불만 제기를 접수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즉시 피해 호소인의 학부모에게 불만 제기 접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이 불만 제기의 대상이라면 수퍼인텐던트는 반드시 즉시 피해 호소인의 학부모에게 불만 제기 접수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 V. 조사 중 직원의 격리

체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중, 해당 직원을 학생과 관련한 직무에서 배제하여 학생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조사의 무결성을 확보합니다.

- A. 체벌에 대한 불만 제기가 접수되면, OSI는 조사를 완결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직무 배제 여부를 추천할 것입니다. OSI에서 초기에 직원 격리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학교장이 격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적 조사 담당실이 검토합니다.
- B. 직원 격리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동의 심각성,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이전 기록, 제기된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 수위,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학생 간 접촉 빈도 및 그 성격, 기타 연관 요인.

- C. 체벌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학교장은 직원의 격리 시작 날짜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조사의 대상이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VI. 조사

- A. 체벌의 혐의는 OSI에서 조사하거나 학교 자체 조사(SBOI)로 학교가 담당합니다. OSI에서 체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OSI는 학교장에게 OSI가 조사를 실시할지 아니면 SBI로 조사할 지에 대해 안내합니다.
1. 모든 교육청 직원들은 체벌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소환된 경우 반드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OSI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 직원의 인터뷰를 조정 및 정리하고 요청된 문서들을 준비하는 등 지원하여야 합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OSI가 요청한 SBI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니어 필드 감독관은 학교장/대리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합니다(섹션 VI.C 참고). SBI 조사 대상이 권고 시점에서 더이상 학교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OSI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OSI가 추가 지시를 할 것입니다.
  3.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뉴욕 경찰(NYPD) 및 SCI에 즉시 연락하고 추가 지시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조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 B. 조사가 OSI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다음의 조사 단계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1. 피해 호소인과 학생/교직원 목격자와의 인터뷰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sup>4</sup>
  2.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조사 인터뷰 시 노조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여 체벌 혐의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48시간 통보 양식을 사용하여 48시간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sup>5</sup>

<sup>4</sup> 학생 목격자와 인터뷰할 때,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부모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교감, 단, 사회복지사, 가이던스 감독관 등 사건과 관련 없는 행정직 또는 교직원 참석 하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up>5</sup> 학생 목격자와 인터뷰할 때,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부모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교감, 단, 사회복지사, 가이던스 감독관 등 사건과 관련 없는 행정직 또는 교직원 참석 하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48시간 통보 및/또는 노조 대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노조 대리인 동석 없이 또는 서면 통보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는 조사 인터뷰가 소집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반드시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sup>6</sup>
4. 결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만나십시오. 회의에서, 해당 직원에게 제기된 체벌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 a)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생 목격자 진술서 또는 성인 목격자 진술서를 검토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며, 반드시 노조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해당 노조의 대변이 있는 경우) 해당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 보호정책<sup>7</sup>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대리인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본을 반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및/또는 노조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b)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노조 대리인이 개인정보 인지 정책에 서명하면 직원과 노조 대리인은 모든 증인 진술서를 수정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과 노조 대리인은 모든 진술서의 내용을 필사할 수 있지만 복사본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c)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개인정보 인지 정책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과 관련된 모든 신상 식별 정보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노조 대리인에게 제공되기 전 피해 학생의 진술서, 증인 학생의 진술서, 성인인 증인의 진술서에서 삭제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노조 대리인은 수정된 형태로 모든 진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원과 노조 대리인은 진술서의 수정된 진술서의 내용을 필사할 수 있지만 복사본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5. 피해 호소인과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증인의 증거와 신빙성을 평가하고 불만 제기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sup>6</sup> 48시간 통보 양식은 직원 InfoHub(시니어 필드 감독관 페이지)에 제공됩니다.

<sup>7</sup> 포기 각서는 직원 InfoHub(시니어 필드 감독관 페이지)에 제공됩니다.

6. 불만이 입증되면 징계 회의를 개최합니다.<sup>8</sup> 징계 회의에 참석한 모든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노조 대리인은 징계 조치 시행 전 모든 진술서를 읽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직원의 노조 대리인이 개인정보 인지 정책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과 관련된 모든 신상 식별 정보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노조 대리인에게 제공되기 전 피해 학생의 진술서, 증인 학생의 진술서, 성인인 증인의 진술서에서 삭제됩니다.
- C. 학교 자체의 조사 만인 경우:
1. 불만 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학교장은 반드시 불만 제기의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체벌 및/또는 언어적 학대 혐의— 조사 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각각의 제기된 주장에 대해 내려진 결정을 설명해야 합니다(양식: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시니어 필드 감독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시간은 불합리하게 거절될 수 없습니다.
  2. SBI가 완료되면 학교 슈퍼바이저는 반드시 완전히 작성되고 서명을 받은 조사 보고 양식과 모든 면담 노트, 서면 진술서,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등을 스캔/이메일 또는 팩스로 시니어 필드 감독관에게 보내어 해당 서류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시니어 필드 감독관은 학교 슈퍼바이저의 초기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학교 슈퍼바이저에게 접수 후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SBI는 학교 슈퍼바이저가 시니어 필드 감독관에게 종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에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아래 4문단에 설명된 상황은 예외입니다.
  4. 시니어 필드 감독관이 학교 슈퍼바이저에게 조사 보고 양식 접수 후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학교 슈퍼바이저는 조사를 최종 종결하고 최종 보고서를 징계서(해당되는 경우)와 함께 시니어 필드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시니어 필드 감독관은 조사가 종료되었음이 반영되도록 관련 기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5. 신속히 SBI를 완수하지 못하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 사건을 종료할 때 OSI 또는 SBI의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제기된 주장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 호소인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중재나 지원이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sup>8</sup> 학교장/대리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학교장/대리인이 이 답변과 최종 결정과 징계를 내리기 전 모든 다른 증거를 고려한다면 조사 및 징계 회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학부모와 중재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 VII. 인사 처리

- A. 학교장은 반드시 체벌 혐의가 입증된 모든 직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학교장이 본 규정의 위반이 아닌 기타 부적절한 품행 및/또는 비전문적인 행동에 대해 직원을 지도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징계 서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장은 시니어 필드 감독관과 상의합니다.
- B. 사건이 종료되거나 종결되면 혐의를 받던 직원에게 반드시 조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조사 계류 중 혐의를 받은 직원이 재배치되었고 재배치에 다른 이유가 없던 경우, 해당 직원은 반드시 원래 보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C. 이 규정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면직 또는 기타 적절한 후속 조치가 포함됩니다.

## VIII. 기밀 유지

본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조사에 협조할 의무, 가해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 및/또는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체벌에 대한 조사를 알고 있는 직원들은 불만 제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피해 학생 및 목격자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 IX. 조작하기/보복 금지

체벌 조사를 부당하게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 또는 체벌을 경험하고 신고하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시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SCI에 즉시 (212) 510-1400 또는 intake@nycsci.org로 보고해야 합니다.

## X. 뉴욕주 교육부에 보고

교육청은 뉴욕주 규정에 따라 최소 매년 뉴욕주 교육부에 체벌 관련 불만 제기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XI. 면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특수한 경우 학교 시스템의 최대 이해를 위해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xii.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65 Court Street –  
Room 922  
Brooklyn, NY 11201

전화번호: 718-935-3800

이메일: [OSI-Inquiries@schools.nyc.gov](mailto:OSI-Inquiries@schools.nyc.gov)

학교 자체 조사의 경우 시니어 필드 감독관에게 연락하십시오.